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2가합102479(본소), 2023가합201274(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 청구]

## 전 문

**원고(반소피고)**합자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정문수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주영

**변론 종결**2024. 8. 28.

**판결 선고**2024. 10. 23.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3,722,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0,70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2024. 10.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49,760,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4,511,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6. 4.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D가 C에 발주한 'E 신축공사' 중 '알미늄창호공사(AL창호 및 금속판넬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0. 6. 4.부터 2021. 4. 30.까지, 공사대금 7,33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18.경 피고와 피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알미늄창호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20. 6. 18.부터 2021. 4. 30.까지, 공사대금 1,91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1. 3. 17.경 '유리 규격 변경에 대한 단가 변동'을 사유로 기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계약금액에서 578,600,000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금액을 2,49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1. 8. 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합계 2,178,413,05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미지급 공사대금 316,386,944원(= 2,494,800,000원 - 2,178,413,0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노턴테이프 규격 변경, ② VMU(Visual Mock Up)-1, 2/ VMU-3, 4 시공, ③ ACW-1, 2 유리해체 및 재시공, ④ 연결캐노피 유리자재납품, ⑤ GL-01 38T 저철분로이복층유리 파손유리 자재대(7층), ACW-11 32T 로이복층유리 파손유리 교체공사로 인한 추가·변경공사대금 합계 233,373,140원(부가가치세 포함)1)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반소 지체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C와 사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21. 9. 3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간도 연장되었다.

나) 피고 측이 이 사건 계약상 약정 공사기간인 2021. 4. 30. 이후에도 수 차례 발주 지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지체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

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C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 지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완성하지 않았고, 원고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금액을 산정하면 합계 2,238,1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여기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59,701,944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원고의 추가·변경공사대금 청구 중 노턴테이프 규격 변경, VMU 시공 부분, 파손유리 교체공사는 인정하나, 나머지 항목은 인정할 수 없다.

## 3. 판단

###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참조).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의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 44781(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감정인 F의 감정 결과(피고 신청)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정액도급계약(총액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의 물품납품·설치 계약조건 제5조 가)항은 "총 공사계약금액은 2,49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10조 라)항은 "설계변경이 없는 한 내역서 물량은 도면 검토 및 수량 산출에 의거 할증을 포함한 총액견적이므로, 설계변경 외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상 피고와 원사업자인 C 사이의 물량 정산 등에

따라 추후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③ 피고는 이 법원에 2021. 12. 21. 자 도면 및 최종 내역서를 기준으로 원고가 시공한 모든 부분에 관하여 공사에 투입되기로 한 공사자재가 내역서에 기재된 수량과 같이 투입되었는지 여부, 모든 공사에 투입된 물량과 수량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여부, 실제 투입된 공사자재의 수량과 최종 내역서에 기재된 단가를 바탕으로 산정된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한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상 공사대금(2,268,000,000원)을 130,000,000원을 초과하는 2,39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7.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8.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6,386,944원(= 2,494,800,000원 - 2,178,413,0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 날인 202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변경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원고 신청)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지시로 아래와 같이 7개 항목에 관하여 추가·변경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합계 216,168,732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인정된다.

|    |                                                                      |             |             |             |
|----|----------------------------------------------------------------------|-------------|-------------|-------------|
| 1  | 가. (1) 로이복충유리 24T(총두께 24mm)를 32T(총두께 32mm)로 변경시공                     | 43,338,593  | 39,101,925  | -4,236,668  |
| 2  | 가. (2) 노턴테이프 규격 변경 시공                                                | 14,965,100  | 32,090,000  | 17,124,900  |
| 3  | 가. (3) 누드엘리베이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 138,828,000 | 137,576,000 | -1,252,000  |
| 4  | 나. (1) VMU(Visual Mock Up)-1, 2/ VMU-3, 4 시공                         |             | 32,300,000  | 32,300,000  |
| 5  | 나. (2) ACW-1, 2 유리해체 및 재시공                                           |             | 63,400,000  | 63,400,000  |
| 6  | 나. (3) 연결캐노피 유리자재 납품                                                 |             | 106,314,500 | 106,314,500 |
| 7  | 나. (4) GL-01 38T 저철분로이복충유리 파손유리 자재대(7층), ACW-11 32T 로이복충유리 파손유리 교체공사 |             | 2,518,000   | 2,518,000   |
| 합계 | 197,131,693                                                          | 413,300,425 | 216,168,732 |             |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추가·변경공사대금 216,168,732원에 원고가 자인하는 기성공제분 9,500,000원(연결캐노피 관련 납품 자재대금 중 8,500,000원, 유리닦기 대금 1,000,000원)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20,666,873원[= (216,168,732원 - 9,500,000원) × 10%, 원 미만 버림]을 더한 추가·변경공사대금 227,335,605원(= 216,168,732원 - 9,500,000원 + 20,666,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합계 543,722,549원(= 미지급 공사대금 316,386,944원 + 추가·변경공사대금 227,335,6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다음 날인 2021.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참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7745(본소), 2013다7752(반소)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간은 2020. 6. 18.부터 2021. 4. 30.까지인데, 원고는 2021. 8. 2.경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 234,511,200원(= 이 사건 계약금액 2,494,800,000원 × 지체상금률 1/1000 × 지체일수 2021. 5. 1.부터 2021. 8. 2.까지 9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도급공사는 알미늄창호공사(AL창호 및 금속판넬 공사)로서 위 하도급공사에는 유리 납품 및 설치 공사인 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선행, 후행 공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가 2021. 8. 2.경 완료되었음에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하도급공사기간은 최종적으로 2021. 10. 15.까지로 연장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외에 후속 공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도급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하도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도급 공사기간의 말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공사기간인 2021. 4. 30.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공사 지체 기간 중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 지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원피고의 지위,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은 과다하므로 이를 6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도급공사기간이 2021. 10. 15.까지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C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지는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지체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더라고 그 손해액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측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약정 공사기간 말일인 2021. 4. 30.이 경과한 이후에도 2021. 5. 6.경부터 2021. 8. 1.경에 이르기까지 원고 측에 수 차례 구체적인 작업이나 발주를 지시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본소 제기 후 약 1년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에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등으로 지체상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 140,706,720원(= 234,511,2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3. 2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길연**

**판사정희진**

**판사임동환**

1) 추가·변경공사대금 합계 233,373,140원 = ① 노턴테이프 규격 변경 17,124,900원 + ② VMU(Visual Mock Up)-1, 2/ VMU-3, 4 시공 32,300,000원 + ③ ACW-1, 2 유리해체 및 재시공 63,400,000원 + ④ 연결캐노피 유리자재 납품 106,314,500원 + ⑤ GL-01 38T 저철분로이복층유리 파손유리 자재대(7층), ACW-11 32T 로이복층유리 파손유리 교체공사

---

2,518,000원 - 기성공제분 9,500,000원(연결캐노피 관련 납품 자재대금 중 8,500,000원,  
유리닦기 대금 1,000,000원) + 부가가치세(10%) 21,215,840원